

「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·조사 시 불출석·증언거부
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8월 28일

나. 발 의 자: 김근한, 강승수, 김낙관, 김민성, 김재우,
김춘남, 소진혁, 신용하, 양진오, 이상호,
이지연, 장미경, 정지원, 추은희 의원 (14인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8월 2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9월 5일
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근 한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행정사무감사·조사에 관한 과태료 적정성 제고를 위해 위반
행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반행위의 정도를

고려하여 과태료가 차등부과될 수 있도록 함.

다. 주요내용

- 위반 횟수 등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 차등 부과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5항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재 환

○ 본 조례안은

-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(안)으로 제안된 것으로,
- 개정조례안은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여 내용과 정도를 고려한 과태료 금액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과 배치됨이 없음.
-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집행부의 과도한 재량권을 제한하여 제재규정의 적정성을 가질 것으로 보아 개정 취지 및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